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0989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09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단1362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규선, 홍성무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표

변론 종결2024. 4. 18.

판결 선고2024. 5. 16.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단1362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 인도, 퇴거 및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양주시 C 공장용지 1912㎡ 중 별지 도면 표시 44~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61㎡를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하라.

나.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중 별지 도면 표시 31~35, 48, 41~44, 47,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27㎡를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하라.

다.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17㎡ 중 별지 도면 표시 35~40, 4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6㎡에서 퇴거하라.

라.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8,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4'를 인도하라.

마. 47,147,235원 및 2022. 9. 24.부터

1) 경기도 양주시 C 공장용지 1912㎡ 중 별지 도면 표시 44~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61㎡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중 별지 도면 표시 31~35, 48, 41~44, 47,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27㎡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82,31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8,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4㎡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8,89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17㎡ 중 별지 도면 표시 35~40, 4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6㎡'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3,450,000원 및 2022. 9. 24.부터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건물의 철거 또는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95. 10.경 G의 소유였던 경기도 양주시 F 공장용지(1,847㎡이었다가 이후 분할되어 1825㎡가 됨, 이하에서는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1. 22. 위 토지에 접한 H 소유였던 경기도 양주시 C 공장용지 1912㎡와 D답 2282㎡(이하에서는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다. G가 1987. 12.경 이 사건 피고토지 지상 면적 195.56㎡ 규모의 창고건물 1동을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이후 위 건물은 I에게 양도되었으며, E은 1996. 9. 6. 위 창고를 매수한 다음 2000년경 2회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거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건축면적 756.81㎡ 규모의 건물(이하 위 증축 전후 건물을 모두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함)이 되었다.

라. 이 사건 피고건물에 접한 상태로 철근콘크리트조 117㎡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건 원고토지 위에 있고 일부는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있으며, 위 건물은 2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그 사이에 벽이 있고 각각 전용 출입문이 있다. 위 건물은 G가 신축하여 J을 운영하는 H에게 양도한 것인데 H이 방치해 둔 것을 원고와 E이 각 자기 소유 토지 쪽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해 왔다(이하 위 무허가건물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하고, 그 중 E이 사용해 온 부분을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1. 1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 및 이 사건 피고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바. 이 사건 피고건물의 일부[청구취지 기재 (ㄱ)부분 61㎡(이하에서는 '(ㄱ)부분'이라고만 한다), 청구취지 기재 (ㄴ)부분 127㎡(이하에서는 '(ㄴ)부분'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청구취지 기재 (ㄷ)부분 26㎡, 이하에서는 (ㄷ)부분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가 그 동안 공지로 사용해 온 부분[청구취지 기재 (ㄹ)부분 4㎡(이하에서는 (ㄹ)부분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원고토지 내에 있다.

사. (ㄱ)부분 61㎡ 부분에 대한 2011. 11. 1.부터 2022. 9. 23.까지의 임료는 합계 15,391,000원이고, (ㄴ)부분 127㎡, (ㄷ)부분 26㎡, (ㄹ)부분 4㎡ 합계 157㎡에 대한 2011. 11. 1.부터 2022. 9. 23.까지의 임료는 38,059,000원이다. 한편, (ㄱ)부분 61㎡에 대한 2021. 11. 1.이후의 월 토지 임료는 월 150,000원이고, (ㄴ)부분 127㎡, (ㄷ)부분 26㎡, (ㄹ)부분 4㎡ 합계 157㎡에 대한 2021. 11. 1.부터 2022. 9. 23. 기간의 토지 임료는 월 349,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시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고토지 중 (ㄷ)부분에 대한 퇴거청구, (1)부분, (ㄴ)부분, (ㄹ)부분에 대한 건물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토지 중 (1)부분, (ㄴ)부분, (ㄹ)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점유라 할 것이고, (ㄷ)부분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망 G 또는 위 무허가건물을 G로부터 양수한 사실상의 처분권자 H 등이 권원 없이 이 사건 원고토지 지상에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 원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철거되어야 하며, 피고가 (ㄷ)부분 지상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원고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건물 중 (71)부분과 (ㄴ)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원고토지 중 (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ㄷ)부분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원고토지 중 (1)부분, (ㄴ)부분 건물의 철거 및

인도완료일, (ㄹ)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금액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ㄷ)부분에서 이미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공간 내부에 다수의 물품과 집기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미 위 부분에서 퇴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ㄱ)부분에 대한 2011. 11. 1.부터 2022. 9. 23.까지의 임료는 합계 15,391,000원이고, (ㄴ)부분 127㎡, (ㄷ)부분 26㎡, (ㄹ)부분 4㎡ 합계 157㎡에 대한 2011. 11. 1.부터 2022. 9. 23.까지의 임료는 38,059,000원이며, (ㄱ)부분 61㎡에 대한 2021. 11. 1.이후의 월 토지 임료는 150,000원이고, (ㄴ)부분 127㎡, (ㄷ)부분 26㎡, (ㄹ)부분 4㎡ 합계 157㎡에 대한 2021. 11. 1.부터 2021. 9. 23.까지의 월 토지 임료는 월 349,000원이며, 2021. 9. 24. 이후의 임료 역시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원고의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되는 (ㄱ)부분 61㎡, (ㄴ)부분 127㎡, (ㄹ)부분 4㎡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22. 9.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47,147,235원[= (ㄱ)부분에 대한 15,391,000원 + 31,756,235원{= 38,059,000원 $\times$ (127㎡ + 4㎡/127㎡ + 26㎡ + 4㎡)},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022. 9. 24. 이후 (ㄱ)부분 지상 건물 61㎡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150,000원, (ㄴ)부분 지상 건물 127㎡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82,312원[= 349,000원 $\times$ (127㎡/127㎡ + 26㎡ + 4㎡)], (ㄹ)부분 4㎡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8,891원[= 349,000원 $\times$ (4㎡/127㎡ + 26㎡ +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ㄱ)부분, (ㄴ)부분, (ㄹ)부분에 대한 2011. 11. 1.부터 2022. 9. 23.까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47,147,23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22. 9. 24.부터 (ㄱ)부분 지상 건물 61㎡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 2022. 9. 24.부터 (ㄴ)부분 지상 건물 127㎡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2,312원, 2022. 9. 24.부터 (ㄹ)부분 4㎡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8,891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 중 (ㄷ)부분 관련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 부지에 해당하는 (ㄷ)부분도 위 피고가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일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G가 최초로 신축하였고 그 후 사실상의 처분권을 양수한 H이 이를 비워두고 장기간 방치한 것인데, 피고가 그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그러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자(망 G) 및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는 미등기양수인(H)은 따로 있고, 피고가 위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양수하는 등으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적도 없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 부지에 해당하는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ㄷ)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 및 위 부분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이유 없다.

3.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E은 (ㄱ)부분, (ㄴ)부분, (ㄷ)부분, (ㄹ)부분에 관한 경계침범 사실을 몰랐고, 피고는 매매 당시 E으로부터 경계침범 사실을 듣지 못했다. E과 피고는 위 침범 부분이 자신들 소유인 이 사건 피고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해 왔다. E과 피고의 각 점유기간을 더하면 20년이 넘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 E은 2000년 후반경부터 원고 측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원고토지 일부와 건물 등을 무상사용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3번 정도 경계측량을 하여 위 경계침범 사실을 알고 이를 E에게 통보했다. E은 매매 당시 경계측량 자료를 지참하여 피고에게 위 경계침범 사실을 고지하면서 경계위치를 설명해 주었다. E과 피고의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E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857, 858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 13 내지 15, 17, 1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토지 중 (ㄱ)부분, (ㄴ)부분, (ㄷ)부분, (ㄹ)부분에 관한 E의 점유는 그 점유 취득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함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E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

가)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피고토지 및 이 사건 피고건물의 소유권 취득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는 1995년경 다른 곳에서 가축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와는 같은 업계(가축공장) 종사자이자 오랜 친구인 망 G는 당시 이 사건 피고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피고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역시 가축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G가 1995년경 나에게 이 사건 피고토지와 이 사건 피고건물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경락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현장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피고토지를 경락받게 되었다. 이 사건 피고건물은 낙찰받지 못하여 이후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낙찰자 I로부터 1996. 9.경 매수하였다. 경매를 볼 때부터 친구 G를 통해 이 사건 피고건물 및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원고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피고건물은 처음부터 4개동으로 신축되었으나 그 중 1개동에 대하여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건물이었다. 이후 내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이 사건 피고건물의 나머지 동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2000년경 2회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피고건물 4개동 중 원고의 경기도 양주시 D 답 2284㎡ 지상에 ('ㄴ'자로) 걸쳐져 있는 마지막 1개동은 농지에 걸쳐있어 양성화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 사건 피고건물이 침범한 이 사건 원고토지도 내가 함께 매수할 요량으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그 후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권 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토지의 매수를 포기하였다."

나) 또한 E은 자신이 이 사건 피고토지를 소유하면서 2000년 후반경부터 원고의 전 대표자 L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원고토지에 대한 관리 및 임차료 징수 등 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는 대신 이 사건 피고건물이 침범한 토지에 대한 임료를 내지 않고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피고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경계침범사실을 고지하고, 경계침범이 확인되는 도면과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곳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원고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더라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자신이 이 사건 원고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토지의 매각을 시도하면서 약 3회 정도 경계측량을 하였고 이 사건 피고건물의 경계침범이 확인된 부분을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건물의 외벽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표시된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원고토지를 'M'라는 업체에 임대해주고, 2009. 1. 무렵 대한지적공사 양주시지사에 의뢰하여 지적공부 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한 적이 있다. 경계복원측량 결과 이 사건 피고건물이 이 사건 원고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과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경계복원점(아래 도면 원 표시)도 표시되어 원고와 E이 모두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IAGRAM: 양주 임대사업장 경계복원측량 결과도(이미지 생략)

라) 나아가 원고는 2012. 8. 22.에도 위와 같은 측량결과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N'을 운영하는 O와 이 사건 원고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원고토지의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한 E이 이러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나 이 사건 피고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E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모습, 증언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위 E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그 증언내용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다양한 객관적 자료 및 문서와도 일치하고, E이 제1심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나 경위 역시 자연스러우며,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E이 이 사건 피고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점유해 온 부지경계선 안쪽에 2000년경 양주군수로부터 공장 이전 및 설립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도(을 제2호증의5) 및 2022년경 양주군수에게 공장 증축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한 건축개요서(을 제3호증의 2)에 모두 이 사건 피고건물이 이 사건 피고토지 안에 있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이 사건 피고건물에 대한 증축 등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도면에 위 건물이 인접토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E의 증언내용을 고려할 때 위 각 서류에 이 사건 피고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E이 타주점유라는 사실인정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 및 이 사건 피고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사용해 온 자로서 E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의 자주점유를 주장하나 전 점유자인 E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토지 및 이 사건 피고건물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피고건물의 경계침범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고도 경계점을 확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도 함께 복멸되고 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의 의사 없이 이 사건 피고토지를 점유하였음이 증명된 위 E의 점유기간을 제외하면 피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김혜령

판사홍유정

별지